

삼성화재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핵심설명서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본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이 퇴직연금보험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자보호 비대상
원금 손실	원리금 보장	원금손실 가능성 존재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	보험회사	계약자 부담

*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① 이율보증형보험 중도해지 시 만기이자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 관련

A고객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에 가입함. 이후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였는데, 이전 시점에 사전에 안내 받은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됨에 이의제기

원리금보장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의 경우 사전에 공시되어 있는 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며, **만기 이전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② 이율보증형보험 상품 교체 시 만기이자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 적용될 수 있음

B고객은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에 가입함. 이후 만기일 도래 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교체하였는데, 교체시점까지의 이자가 줄어들어 해당 시점 적립금평가금액보다 작아짐에 이의 제기

중간에 상품을 교체 시 기존의 이율보증형보험의 **만기 전에 교체 할 경우**, 해당 상품은 **중도 해지되어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됨.**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을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1899-3009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상담	https://consult.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분쟁조정	www.samsungfire.com (고객센터>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신청)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삼성화재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삼성화재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제공기관	삼성화재해상보험					
상품특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					
적용이율 만기	<table><tr><th>대상제도</th><th>적용이율 만기</th></tr><tr><td>모든 제도 (DB, DC, IRP)</td><td>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가능</td></tr></table>	대상제도	적용이율 만기	모든 제도 (DB, DC, IRP)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가능	
대상제도	적용이율 만기					
모든 제도 (DB, DC, IRP)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가능					
적용이율	부담금 납입일의 삼성화재해상보험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공시 - 퇴직연금공시 - 원리금보장형 - 상품현황)					
적용이율 산출기준	적용이율 결정 :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표금리(%)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권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이율보증형 보험의 이율보증기간(만기)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 →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은 적용이율의 60%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적용이율의 60%)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연금계약 내에서 이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만기 재예치	[DB제도]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재예치.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재예치되며 재예치 시점의 적용이율 적용 [DC, IRP제도]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 상환					
수수료	계약서류(상품 약관) 및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퇴직연금 공시→퇴직연금 사업자공시) 참조					
예금자보호	[DB제도]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 IRP제도]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이율보증형 보험

만기 전 해지 관련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적용이율의 60%)이 적용됩니다.

삼성화재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디폴트옵션)」 상품설명서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삼성화재 이율보증형보험(디폴트옵션)	
상품제공기관	삼성화재해상보험	
상품특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	
적용이율 만기	대상제도 DC, IRP 제도	적용이율 만기 3년
적용이율	부담금 납입일의 삼성화재해상보험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공시 - 퇴직연금공시 - 원리금보장형 - 상품현황)	
적용이율 산출기준	적용이율 결정 :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표금리(%)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권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이율보증형 보험의 이율보증기간(만기)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 →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은 적용이율의 80%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적용이율의 80%)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연금계약 내에서 이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만기 재예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 상환* * 단,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이 포함된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험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재예치되며 재예치 시점의 적용이율 적용)	
수수료	계약서류(상품 약관) 및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퇴직연금 공시→퇴직연금 사업자공시) 참조	
예금자보호	[DC, IRP제도]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 - 이율보증형 보험(디폴트옵션)

만기 전 해지 관련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적용이율의 80%)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1)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동법 시행령 제 38 조에 의거하여 당사와의 개별상품 계약 체결 시 동법 상의 설명 의무 위반 또는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의 발생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또는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5 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 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고객님의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2) 상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 삼성화재 퇴직연금 고객센터(1899-300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